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5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임미애·김병기·김용민

김 현 • 박수현 • 박해철

박희승 • 복기왕 • 신정훈

오기형 • 오세희 • 윤준병

이광희 · 이병진 · 임광현

최기상 • 황정아 의원

(17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·지구·구역 또는 구획 등(이하 이 조에서 "구역등"이라 한다)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 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, 최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 인구가 감소되는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 단지 활성화라는 정책목적 달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토계획법에 따 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의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

를 완화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례)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28조의2(「국토의 계획 및 이
	용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특
	례)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
	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「국토
	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	률」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
	건축물 건축 제한 등을 달리
	정할 수 있다.